

#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9
----------	-----

제출년월일 : '96. 10.

제 안 자 : 안 산 시 장

## □ 개정 사유

-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등 하수처리 사업추진에 대한 투자 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충 ('95 하수도 원가산정 용역결과 50.39%의 인상요인 발생)
-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시달에 따른 현행 조례의 전면개정 필요

## □ 주요 글자

- 하수도사용료 요금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현행 5개 업종에서 상수도 업종과 일치시켜 6개 업종으로 변경 조정
- 하수처리 산정원가 상승에 따라 하수도 사용요율 9.9% 인상
- 원인자 부담금 산정내역 구체적 명시
  - 하수량 1/10이상 경우 부담금 1/2 → 2/3이상으로 변경
  - 타공사로 인한 경우 전액 부담
  -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면제의 경우 처리장 설치와 정화시설 설치비용과 비교 적은 비용 전액 부담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명시

## □ 참고 사항

-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및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점용료등의 결정기준) 및 제2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인 하수량)
-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 ('95. 5 환경부)
- 안산시 하수도 적정사용료 산정용역 보고서 ('95. 12 안산시)
-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제27조 (업종의 구분)

## □ 조정안에 따른 사용료 대비표

업 종	구 간 (톤)	현행요율 (원)	조정요율 (원)	인상율 (%)	비 고
가 정 용	0 - 10	350	380	8.57	업종 변경 및 구간 축소조정 기준 : 일반용
	10 - 30	45	49	8.89	
	30 - 50	55	60	9.09	
	50 - 100	95	105	10.53	
	100 m' 초과	155	-		
업 무 용	0 - 10		500		업종 신설
	11 - 30		60		
	31 - 50		75		
	51 m' 이상		120		
영 업 용	0 - 10		700		업종 신설
	11 - 30		70		
	31 - 50		85		
	51 - 100		145		
	101 - 500		200		
	501 m' 이상		250		
옥탕 1종	톤 당		77		업종 신설
옥탕 2종	0 - 200		20,000		업종 신설
	201 - 300		135		
	301 - 500		160		
	501 m' 이상		210		
공 공 용	톤 당	70			업종 폐지
공 중 용	톤 당	35			업종 폐지
전용공업용	톤 당	85	94	10.59	기준 : 산업용
일시사용	톤 당	95			업종 폐지

#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 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 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제3조(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 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의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거의 준설
2. 차집관거를 제외한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등 기타 공작물의 설치. 개축. 확장. 수선 및 유지관리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①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과 같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차집관거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 관리비
3. 간선하수관거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비 및 차집관거의 준설비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 개축 및 유지관리비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하수 도시설물의 설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 기타 비용

###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8조(사용개시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안산시 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장 사용료·점용료·부담금

- 제12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 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거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지역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16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 ③ 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7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영향평가비, 용지비(지장을 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

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 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 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 보수. 개수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2) 산업입지및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  
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  
조성, 공장부지조성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5)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  
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필요한 경  
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  
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2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24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배수설비를 설치한자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자
3. 제8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한자
4. 정당한 사유없이 제24조 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공공하수도를 계속하여 사용한자

②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기타부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5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별표 1 ]

하수도 사용료 요율 표

구 분 업 종	1개월 기본요금		초과사용요율	
	기본하수량 (m <sup>3</sup> /월)	기본요금 (원)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0-10	380	11 - 30 31 - 50 51이상	49 60 105
업 무 용	1m <sup>3</sup> 당 77원			
영 업 용	0-10	700	11 - 30 31 - 50 51 - 100 101 - 500 501이상	70 85 145 200 250
육 탕 용	1 종	1m <sup>3</sup> 당 77원		
	2 종	0-200	20,000	201 - 300 301 - 500 501이상
				135 160 210
전용 공업용	1m <sup>3</sup> 당 94원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별표 1 -1]

## 하수도 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역방,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가게</li> <li>· 고아원, 영아원, 양노원, 탁아소</li> </ul>
업 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li> <li>· 사설소화전</li> <li>· 관공서, 병영</li> <li>· 학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생산, 제조용수제외)</li> <li>·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국가유공자단체 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기타 사회복지시설</li> </ul>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접객업(대중음식점, 유홍음식점, 전문음식점, 다방, 제과점, 휴게실등)</li> <li>· 공연장</li> <li>· 유기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li> <li>·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li> <li>· 예식장</li> <li>· 사진현상소</li> <li>· 숙박업(여인숙제외)</li> <li>· 사설학원</li> <li>· 도축장</li> </ul>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빙업, 냉동, 냉장업, 청량음료제조업, 식품가공 제조업, 양조업(주정제조업), 부록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화공약품제조업, 화장품제조업(단, 초과 사용량은 초과요금증 가장 낮은 1단계요금 적용)</li> <li>. 금융기관(새마을금고제외)</li> <li>. 체육시설업(체육도장, 탁구장 제외)</li> <li>.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 건축물준공검사전까지, 운반급수: 최종단계요율 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최종단계 요율)</li> <li>.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업태</li> </ul>
욕탕용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li> </ul>
욕탕용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 업)</li> <li>.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한실을 포함한 욕실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li> <li>- 욕실 및 발한실, 탈의실외에 별개의 휴식장을 갖춘 안마시술소</li> </ul> </li> </ul>
전용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배. 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li> </ul>

## [별표 2]

수질 하수도 사용료

##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 x 시간당 폐수배출량(m³)] x  $\frac{1}{1000}$  x kg단가  
x 1일조업시간 x 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3]

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 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 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8

[별표 4]

##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총

$$\text{사업비} \times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text{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총사업비 X

$$\frac{\text{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text{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times \alpha$$

※ 총사업비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alpha : (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완공이후 평균 도매물가상승율}}{100})^n$$

n :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